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사대상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수사기록 제공 특칙 신설 등〉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66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수사대상에 ‘감사 방해행위’ 추가 및 ‘관련사건’ 정의 확대 (안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3항제1호)	3
2. 파견요청기관 및 파견공무원 수 확대(안 제6조제5항)	13
3. ‘공소유지변호사’ 신설 및 파견군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 (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 후단)	17
4.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25
※ 참고자료	31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31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3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득구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26.
3. 회부연월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 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 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가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특별검사의 의지가 공판 과정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과 파견된 군검사에게 직접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방대한 수사 범위를 고려할 때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등 파견공무원의 증원이 절실함.

이에 3대 특검의 기록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수사대상 확대 및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3항제1호).

나.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5항).

다.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서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

라.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수사대상에 ‘감사 방해행위’ 추가 및 ‘관련사건’ 정의 확대(안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u>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u> ,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 -----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 -----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1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 ----- -----.
1. <u>범인은닉죄</u> ,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1. <u>범인은닉죄</u> , <u>범인도피죄</u>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¹⁾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

-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지·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적·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범죄 혐의 사건
 - 가.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직·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 나.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 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
 - 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수호신TF’,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 등 군(각급 부대) 내 계엄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저장장치(USB)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윤석열”이라 한다),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및 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2.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건진법사),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유기·직권남용 등을 통해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는 의혹사건에 더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통해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는 의혹사건까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5호).

[표 1] 수사대상 확대 비교

	현행	개정안
수사	지연, 은폐, 비호	현행 + 방해
감사	-	방해, 지연, 은폐, 비호

또한, ‘관련사건’의 정의에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에 더하여 ‘범인도피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제1호).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가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음.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2008. 1. 10.

14.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 대신에 정치권력으로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소추(공소제기·공소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이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 지 여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결정함²⁾.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보면,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별검사법에서 수사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열거하여 규정한 취지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필요성과 함께 특별검사제도의 한시성·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헌법재판소 2008. 1. 10. 2007헌마1468 결정

○ 개정안과 같이 수사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규정에 대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수사대상 확대의 필요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재 특별검사가 수행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를 사후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수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지,

그러한 의미인 경우 수사절차의 하자가 사후 입법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³⁾.

○ 둘째,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에게 남아 있는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수사대상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90일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 경과에 따라

3) 이른바 김건희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수사하여 공소제기한 사안과 관련하여,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됨(2026. 6. 24. 선고, 2026도5736 판결).
- 피고인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위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공사에 적용될 특정 공법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총괄하면서, 그 선정절차에 지원해 심의대상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2023. 6. 6.경부터 2024. 11. 23.경까지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사건과의 관계에서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대상을 벗어난 수사과 그로 인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

특별검사가 서면보고를 통해 30일을, 대통령 승인을 통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수사기간(준비기간 제외)은 150일 임4).

현행법에 따른 수사기간의 기한이 7월 24일까지인데, 수사 종료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행법에 따른 수사 인계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

-
- 4)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함(제10조제6항).

수사 인계 제도의 취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수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한정된 수사기간과 인력이라는 제한을 받는 특별검사제도 아래에서 법 제정 당시보다 수사대상을 확대하여 수사력의 분산을 초래하기 보다는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하여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아울러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사건’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3항)과 관련하여,

과거 헌법재판소는 개별 의혹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및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⁵⁾한 바 있으나,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3대 특검법⁶⁾’이 개정(2025. 9. 26.)될 때 ‘관련 사건’의 정의 규정이 신설⁷⁾되었고, 현행법도 이와 동일하게 관련사건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

- 현행 제2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건의 정의는 「형사소송법」⁸⁾ 제11조제4호에 규정된 정의와 동일한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범인도피죄를 관련 사건의 정의에 추가하려

5) 헌법재판소 2008. 1. 10. 2007헌마1468 결정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수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특별검사가 법률전문가인 점,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7호가 ‘제1호 내지 제6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여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과 유기적·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 8)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는 것임.

- 검찰 수사 시 범인은닉으로 송치가 되었으나 그 실질을 범인도피로 판단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의율 변경 문제로 보아 단순히 죄명을 변경하는 실무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법원에서도 범인은닉으로 기소된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⁹⁾하나,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범인도피죄를 관련 사건으로 보아 수사 개시를 할 때 절차상의 하자 발생 가능성을 없애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관계기관 의견¹⁰⁾은 다음과 같음.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종합특검¹¹⁾’)는 안 제2조제1항제15호와 관련하여,

수사와 감사는 공무원의 비위, 불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적발하는 공통된 기능이 있는데 지난 정권 당시 윤석열 등이 자신들의 비리에

9)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192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743호 등 다수

10)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공문 (시행 : 종합특검 운영지원과-524호, 2026. 7. 1., 접수 : 법사위 - 2379, 2026. 7. 1.)

11)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2차례 연장되어 2026년 7월 24일까지임.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종합
특검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고,

안 제2조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범인도피죄 역시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파견요청기관 및 파견공무원 수 확대(안 제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u>경찰청</u>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u>130명</u> 이내로 한다. ⑥ · ⑦ (생략)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경찰청</u> , <u>국방부</u> ----- ----- ----- ----- ----- <u>150명</u> -----. ⑥ · ⑦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파견근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국방부를 추가하고,

현행 ‘13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파견공무원의 수(파견검사 제외)를 각각 ‘15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 현행법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최대 130명의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법 제6조제5항).

- 그런데, 제안이유에 따르면 동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 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를 이첩받을 수 있는데, 군과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방대한 수사 범위를 고려할 때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등 파견공무원의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방부를 파견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고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종합특검에 따르면 2026. 7. 6. 기준 파견검사의 수는 14명, 파견 공무원의 수는 130명으로, 이 중 파견군검사는 파견공무원으로 집계되고 있음.

- 파견공무원의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특별 검사의 한정된 수사기한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종합특검의 수사기한은 7월 24일까지로 개정안과 같이 파견공무원의 수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파견공무원의 파견이 실제로 이루어질 시기를 고려하면 한정된 수사기한으로 인하여 파견공무원이 종합

특검에서 유의미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함.

- 또한, 현행법은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제6항).

해당 규정의 취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종합특검으로의 다수의 공무원의 파견은 해당 기관의 인력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특별검사의 주요 업무인 수사가 완료된 때에는 불요불급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종합특검의 수사기한이 만료되면 곧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야 할 파견공무원을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파견받는 것이 전체 형사사법체계 내의 인력 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관계기관 의견(종합특검)¹²⁾은 다음과 같음.

종합특검 특성상 정부 각 부처에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므로 현재 130명의 파견 공무원 상한을 150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공문
(시행 : 종합특검 운영지원과-524호, 2026. 7. 1., 접수 : 법사위 - 2379, 2026. 7. 1.)

3. ‘공소유지변호사’ 신설 및 파견군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 후단)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생략)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u>제6조의2(공소유지 변호사)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공소유지 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u>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u>-----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공소유지 변호사를 특별수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의2

신설),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파견군검사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在廷)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 안 제6조의2의 공소유지 변호사규정과 관련하여,

공소유지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국가 형벌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 제 265조¹³⁾에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임명하던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 1월부터 삭제됨.

그러나 개정안의 공소유지 변호사 규정은 과거 「형사소송법」 상의 공소유지 변호사와는 성격이 다른 규정으로,

13) 「형사소송법」(2007 6. 1. 개정된 법률 제8496호 이전 법률) 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①법원은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그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당해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단,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④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

상설특검법 및 개별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민간 변호사 중에서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특별수사관 중 특별검사가 지정할 경우 해당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변호사로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것으로 보임.

○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도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8조제4항¹⁴⁾에서 특별수사관은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 사건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된 자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특검법 및 「형사소송법」¹⁵⁾ 체계에 부합한 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⁶⁾.

둘째, 특별검사는 변호사 중 15년 이상의 법조경력, 특별검사보는 변호사 중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인원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소수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분을 보장하며 사망 또는 해임 시 후임 임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개정안에 따른 공소유지 변호사는 법조경력을 요하지 않고 인원수

14)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5)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법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16) 상설특검법 및 역대 개별특검법에서 공소유지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수행함.

및 의무·신분보장·후임 지정절차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셋째,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비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특검법 체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¹⁷⁾.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임명권자를 달리 규정하는 취지는 공소유지 등 특별검사보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특별수사관과 현저히 다른 데에도 있으므로, 대통령이 아닌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17)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에 안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지니는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조경력 및 인원수 및 의무·신분보장·후임 지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지 여부,

공소유지 업무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보의 수를 증원하여 공소유지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제2항 후단 파견군검사의 특별검사 등의 재정 없는 공소유지권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특별검사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수사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권한이 있고¹⁸⁾,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파견검사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음¹⁹⁾.

1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19)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파견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제8조제2항 후단 규정은 당초 상설 특검법이나 개별특검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으나,

대법원(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²⁰⁾에서 정한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²¹⁾하

2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2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일부 발췌

1.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와 피고인 2의 업무수첩과 진술(이하 '피고인 2의 업무수첩 등'이라 한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피고인 1에 대한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생략)

였고,

위 판시사항을 감안하여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2025. 9. 26.) 당시 해당 내용이 신설되어 현행법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음.

- 안 제6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소속 공무원인 군검사를 파견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도 파견군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 의견(종합특검)²²⁾은 다음과 같음.

안 제6조의2와 관련하여,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공소유지(구속 전 피의자심문 포함)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여 특별검사법의 제정 취지가 공판절차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라) 박◆해 정부의 ○○○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죄형법정주의, 유추·확장해석금지, 공소장일본주의,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권한, 공소권 남용,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형사소송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공문 (시행 : 종합특검 운영지원과-524호, 2026. 7. 1., 접수 : 법사위 - 2379, 2026. 7. 1.)

조문 신설이 필요하고,

안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종합특검은 다수 피의자들이 현역군인 시절 범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군검사를 파견받아 군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 중인데, 군 관련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직접 수사를 담당한 군검사가 특별검사·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 하에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수사기록 등에 관한 특칙) ① 3대 특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하 “수사기록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 등을 열람·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 등을 제18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별검사에게 제공한 수사기록 등에 대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3대 특검법상 이를 검찰총장에게 인계할 각 의무를 면한다.

- 개정안은 3대 특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안 제21조의2제1항),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록 등을 열람·복사하게 하여야 하며(안 제21조의2제2항), 특별검사가 수사기록 등을 현행법 제18조²³⁾에 따라

23)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 또는 중간보고 하되,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4항).

또한,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이미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제3항).

안 제21조의2는 상설특검법 및 역대 개별특검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조문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3대 특검법상 특별검사의 모든 기록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형사소송법」²⁴⁾에서는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24)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안보 또는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보존사무규칙」 25)에서도 수사서류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25)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0.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

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한적으로 열람·등사를 인정하고 있음.

- 안 제21조의2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3대 특검법의 특별검사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종합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3대 특검은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3대 특검의 독립적 직무 수행 규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종합특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대 특검에서 수사기록의 제공 또는 열람·복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1조의2제3항).

그런데, 개정안의 ‘공소유지 사건’이 종합특검의 공소유지 사건인지

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3대 특검의 공소유지 사건인지 및 재판장이 어떤 사건의 재판장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안 제4항은 3대 특검법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 등을 검찰총장에 인계할 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상설특검법 및 역대 개별특검법에서 특검의 업무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 인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검 해산 후의 형 집행 또는 훗날의 재심 절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서는 수사기록의 통합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관련 서류 원본이 외부로 제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록의 멸실, 훼손, 개인정보 및 수사 유출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계기관 의견²⁶⁾은 다음과 같음.

종합특검이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3대 특검에게 수사기록 등 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6)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공문
(시행 : 종합특검 운영지원과-524호, 2026. 7. 1., 접수 : 법사위 - 2379, 2026. 7. 1.)

문 의 처
02) 6788-5060

※ 참고자료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법 률 명	본회의 의결일	공포일시행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6.1.16.	2026.1.2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김건희와 명태군·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2.4.15.	2022.4.26.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8.5.21.	2018.5.2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6.11.17	2016.11.22.
이명박 정부의 내국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9.3.	2012.9.21.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2.9.	2012.2.22.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0.6.29.	2010.7.1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2.17.	2007.12.28.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1.23.	2007.12.10.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5.6.30.	2005.7.2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3.11.10.	2003.12.6.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2003.2.26.	2003.3.15.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1.11.22.	2001.11.26.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1999.9.20.	1999.9.30.

* 역대 특별검사법의 주요 내용 비교는 [참고자료2] 참조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은 2021. 4. 2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한 경우 및 2025. 11. 17. 관봉권 떠지 폐기 의혹 및 쿠광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한 경우 등 총 2건이 있음.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웃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 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2차 특검법
임명절차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 의회 -3일 이내 ③ 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좌동)	(좌동)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2일 이내 ③ 대법원장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2일 이내 ③ 대법원장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대법원장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민주통합당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 본회의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지체없이 ③ 특검 후보 추천 위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대한변협 추천 4인 중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교섭단체 합의로 법원행정처장 및 대한변협 회장 이 교섭단체 각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더불어민주당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 임명)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 임명)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2일 이내 ③ 더불어민주당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 임명)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2일 이내 ③ 더불어민주당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 임명)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웃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촉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 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2차 특검법
인명	자격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작동)	(작동)	10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①15년 이상 법조경력 판사·검사· 변호사 ②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공공기 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 종사 또는 대학 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	(작동)	(작동)	(작동)
	결격사유	①공무원 ②법 시행 전 1년6 월 이내에 공무원이 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임 용결격자	①공무원 ②시행일 1 년 이내 공무원이 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임 용결격자	(작동)	(작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임 용결격자	(작동)	(작동)	(작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 년 이내 공 무원이 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 자, 가졌던 자 ④공무원임 용결격자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 특검임명 전 1년 이 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 자 또는 특 검임명 전 1년 이내 에 당적이 있었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 후보 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임 용결격자	(작동) + 정당의 당적 을 가졌던 자	(작동)	(작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 특검임명 전 1년 이 내 대통령 령 비서 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 직에 있 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 후보 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임 용결격자	(작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 특검임명 전 1년 이 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가졌던 자 ⑤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대 단, 3대 특검법 및 상설특검 법에 따라 임명된 특 검·특검보 제외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 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직에 있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특검임명 전 1년 이 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 ⑤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임 용결격자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웃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 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2차 특검법
특별 검사보	①10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2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1인 임명	①10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좌동)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10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5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2인 이상)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좌동)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이내) ③대통령의 4인 이내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6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12인) ③대통령의 6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이상 10인 이하) ③대통령의 5인 임명
특별 수사관 명	특별검사가 사건당 12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6인 이내 임명	(좌동)	특별검사가 사건당 16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2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좌동)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5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0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8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5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00인 이내 임명
권한	①수사협조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2인 이내, 파견 공무원 10인 이내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2회 이상 불응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 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 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 공무원 2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좌동)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 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 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위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 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좌동)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 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5인 이내, 파견 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단, 파견요청 전 관계기관장과 협의 의무)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 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13인 이내, 파견 공무원 35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 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70인 이내, 파견 공무원 14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파견 공무원 3명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③ 대통령기록물 열람권 ④ 미합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수행 검사교감사 지휘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70인 이내, 파견 공무원 14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파견 공무원 1명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③ 대통령기록물 열람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 공무원 6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파견 공무원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15인 이내, 파견 공무원 1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 대통령기록물 열람권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웃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 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2차 특검법
수사 기간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착: 3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60일)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착: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승인) (최장 10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착: 70일 ③연장: 30+2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착: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착: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착: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 보고) (최장 125일)	①준비기간: 7일 (수사금지) ②원착: 30일 ③연장: 10일 (대통령승인) (최장 40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착: 35일 ③연장: 20일 (대통령승인) (최장 5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착: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착: 30일 ③연장: 15일 (대통령승인) (최장 4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착: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착: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착: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착: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진행, 공소 유지 가능 명시) ②원착: 90일 ③ 연 장 : 30+30일 (대통령, 국회 보고)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200일)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국수 본부장에게 인계	(작동)	①준비기간: 20일 (수사 진행 가능 명시) ②원착: 60일 ③ 연 장 : 30+30일 (대통령, 국회 보고)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70일)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국수 본부장에게 인계	①준비기간: 20일 (수사 진행 가능 명시) ②원착: 9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국회 보고)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70일)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국수 본부장에게 인계
재판 기간	①1심: 3월 ②2심: 2월 ③3심: 2월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①1심: 3개월 ②2심: 2개월 ③3심: 2개월	(작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사건 처리 보고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	(작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작동)	(작동) 중간수사발표 규정없음	(작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법무부장관 에게 서면통지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언론브리핑 가능 (파악시일 외의 수사과정)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재판 관할	서울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서울중앙지 법 합의부 전속관할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형사소송법」 상 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작동)	서울중앙지법 합의 부 전속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형사소송법」 상 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웃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촉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 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2차 특검법
정계 요구	-	-	-	-	-	-	-	-	-	-	-	-	-	-	-	-	-	국무위원보통 상장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벌칙	① 직무수행방 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이하 벌금	① 직무수행방 해: 5년이하 징역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① 직무수행방 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이하 벌금	① 직무수행방 해: 5년이하 징역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② 공무원비밀누 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 년 이하 자격 정지	② 동행명령 거 부 1천만원 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② 공무원비밀누 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 년 이하 자 격정지	② 공무원비밀누 설 3년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 지 또는 3 천만원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③ 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 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 지										③ 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 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 지	③ 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 역, 5년이하 자 격 정 지 또는 3천만 원이하 벌 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④ 동행명령 거 부 1천만원 이하 벌금											④ 직무수행 중 지득정 보 소속관 보고 3년하 하 징역, 5 년이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 이 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 수사최장기간: 200일

※ 특검 최대 규모: 총인원(317인) : 특검(1인), 특검보(6인), 파견검사(70인), 파견공무원(140인), 특별수사관(100인)